

審 查 報 告 書

2002. 1. 18
총무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提出日字 : 2002. 1. 14
- 나. 提出者 : 瑞山市長
- 다. 回附日字 : 2002. 1. 14
- 라. 上程日字 : 2002. 1. 18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自治行政課長 崔鐵珪)

가. 提案理由

-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마애삼존불 관리전담원 등 공무원 정원 3명이 승인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임.

나. 主要骨子

-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“843명”에서 “846명”으로 하고, 집행기관의 정원 “828명”을 “831명”으로 조정함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마애삼존불 관리전담원 등 공무원 정원 3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
- 먼저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마애삼존불상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불상중 가장 뛰어난 백제 후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연간 174천여명의 방문객이 있는등 체계적인 관리가 절대 필요하며
- 또한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기구가 지난해 8월 29일 의결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12,691m²에 달하는 건축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건축직 인력이 없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고
-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전국의 25개 민방위 경보 분배소중 19개소를 폐쇄하여 발생한 잉여인력 93명을 경보단말기 5대이상 보유시군 또는 도서·오지시군에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민방위 경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.
-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의 관련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원안가결

의안번호	제246 호
의 결 년 월 일	2002. (제 회)

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2002. 1. .

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. .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개정이유

-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마애삼존불 관리전담원 등 공무원 정원 3명이 승인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임

주요골자

-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“843명”에서 “846명”으로 하고, 집행기관의 정원 “828명”을 “831명”으로 조정함(안 제2조).

기타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: 해당없음.
- 관련법규
 - 지방자치법 제103조
 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
 - 충청남도 행정 12200-3041(2001.11.29)호
 - 충청남도 행정 12200-83(2002.1.10)호

○ 정원 승인현황

(단위 : 명)

기관명	직위	직급	정원	비고
계			3명	
문화공보 담당관실	(마애삼존불 관리전담원)	지방행정8급	1명	전임계약직 라급
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		지방건축8급	1명	
		기능7급(지방통신원)	1명	민방위 경보요원

○ 정원 증감현황

(단위 : 명)

구분	계	일반직								지도	기능	별정 정무
		소계	3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		
현정원	843	656	1	5	43	156	242	162	47	31	134	22
조정정원	846	658	1	5	43	156	242	164	47	31	135	22
증감	+3	+2						+2			+1	

서산시조례 제 호

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본문중 “843명”을 “846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828명”을 “831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843명</u>이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828명</u> 2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846명</u> ----- -----</p> <p>1. ----- : <u>831명</u> 2. (현행과 같음)</p>

정원조례개정 관계법령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- 제103조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.
- ③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·훈련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④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- ⑤제4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.

【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】

- 제21조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
 2.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 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 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 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④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